

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관련 세부평가 방안

1

여러 건의 하도급공종계약이 체결된 현장에서 1개 공종에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지급 시 인정여부?

- 현장內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‘전체’ 하도급계약 공종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지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여러 공종의 하도급계약 중 단지 1개 공종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, 기타 공종의 공사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

2

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부근로자가 현장에서 현금이나 타인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인정여부?

- 사전에 등록된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,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- 다만, 타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SMS 등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 지급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거나, 근로자의 타인계좌 지급 동의 등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가능

※ 신용불량자 등의 경우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곤란하여 타인계좌 활용 중

3

근로자 임금을 지연 지급시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동 임금을 추후 지급하는 경우 인정여부?

-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통상 계속적·정기적인 형태로 지급*이 이뤄져야 하므로 근무월의 익월말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*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‘임금’의 성질